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2756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1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5조의2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기준인 “중대한 위기”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에 따라 “경영상”으로 한정하고자 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5조의2의 “중대한 위기가”를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로 수정함(안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 중 “중대한 위기가”를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u>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u></p> <p><u>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u></p> <p><u>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u></p> <p><u>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u></p> <p><u>있다.</u></p>